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4월 18일, 임미애의원 등 36인

나. 회부일자: 2025년 5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2025.6.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7.3.)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7.17.)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7.30.) 상정,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9.4.)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9.10.)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9.17.)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 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2025.9.18.)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임미애 의원)

최근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등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초대형 산불은 기후위기가 초래한 재난의 실체를 뚜렷이 드러내어 지역 주민의 안전이 위협당함을 여실히 보여줌.

사상자 83명, 산불영향구역 48,106ha, 주택소실 4,760여 동과 35건의 국가유산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산기반 파괴 등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함. 삶과 생업의 터전과 기반이 모조리 파괴됨으로써 경영활동의 재개를 가늠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음.

문제는 기후위기로 인한 초대형산불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3월 21일 발생한 산불피해를 수습도 하기 전에 경상남도 하동 및 경상북도 경주

등 산불이 이어지고 있음.

산불피해가 주거지 및 생산시설로 확산되면 그 재난의 특성상 회복할 수 없는 불가역적 파괴가 수반됨. 따라서 초대형산불로 인한 재산상 피해에 대해 현실적인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주민은 자력으로서는 도저히 재기할 수 없어 삶의 회복과 일상의 복귀는 요원할 것임. 또한 지역 전체가 집단적으로 피해를 입어 마을공동체는 해체되고 지역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임.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폐업으로 인한 경영손실과 경영자금 채무 상환 문제가 발생하여 재기가 힘들어짐으로써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지역 일자리 감소 규모가 커질 것임.

이에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의 지역사회 존속과 회복, 피해주민의 회복과 피해 중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지원금에 그치지 않고 완전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특별법률을 마련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황충연)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일반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마련되어 있고, 정부는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재

난에 대응하고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라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였으며,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복구계획을 수립하였음.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비롯한 기존의 법률과는 별도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번 (초)대형산불에 따른 피해 수습과 지원에 대하여는 그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이번 (초)대형산불이 피해지역의 공동체 기반을 훼손할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초래하여 지방소멸 방지와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가 필요하고,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산불로 인하여 복합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현행 법률의 한계로 충분한 피해복구 및 지원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존 일반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동 법률안들을 제정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이번 (초)대형산불에 따른 피해를 수습하기 위하여 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거나 ② 산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첫째, 피해지역 지원 규정과 관련하여,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구체적인 사항은 현행법령 체계 내에서 이미 지원되었거나 앞으로 지원될 정부 계획의 내용과 함께, 각 정

책 수단을 담당하는 소관부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복 규정이나 정책의 비일관성을 방지하고 피해지역에 필요한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령과 지원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동 제정안을 수용하여 이번 (초)대형산불에 따른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특별법은 그 목적에 따라 특별한 사람, 사항, 장소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산불에만 적용하려는 지원사항이 아닌 일반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특별법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임.

이 경우, 해당 제도개선 사항을 특별법에 해당하는 동 제정안에 반영하기보다는, 별도로 「산림재난방지법」 등의 일반법을 개정함으로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4. 대체토론의 요지

법률안에 대하여 산불진화 지휘체계 및 역할 조정에 대한 검토, 재난

대응체계 및 매뉴얼 개선, 행정안전부의 산불 대응에 대한 역할 수행 등의 산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과 특별법 제정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전향적 검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공공폐기물 처리 시설 복구비 추가 지원, 피해지역 2차 특별교부금(또는 증액교부금) 검토, 피해보상 사각지대 해소 등의 피해지원에 대한 대체토론이 있었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임미애)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